

#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

이 재 민\*\*

## I. 들어가는 말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 구속력이 자연법으로부터만 결과 되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라 정의되며, 인권이 각국의 실정헌법에 성문화되면 그것을 기본권이라 한다.<sup>1)</sup> 이러한 인권은 그 논의의 시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였으나, 그 보호에 있어서는 국제적 차원이 아닌 국내적 관할권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에서 극단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인권은 국내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일반적 기초로서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sup>2)</sup> 이러한 결과 국제사회에서는 UN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UN중심의 인권보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였다.<sup>3)</sup> 첫 번째는 국가주권과 조화의 문제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원래 인권의 문제는 국내 문제였지 국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국제사회는 동서문제라고 하는 정치체제의 차이와 남북문제라고 하는 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의 결과 다방면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데, 이러한 다양성을 국가 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 투고일자 : 2018. 5. 31. 심사일자 : 2018. 6. 15. 게재확정일자 : 2018. 6. 17.

\*\* 법학박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문검토위원.

1) 홍성방, 『개정3판 헌법학』, 현암사, 2006, 224면.

2)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7, 436~437면 참조.

3) 자세히는, 상계서, 437면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UN체제를 통한 인권 보호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필요성의 결과 지역인권협약과 그 협약을 이행하는 지역인권보장제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UN 차원의 인권보장제도와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역인권협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하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하 아프리카인권헌장)”에 관하여 각각 개괄적으로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인권보장제도가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II. UN 차원의 인권보장제도와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의 필요성

### 1. UN 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의 필요성

인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보편성이다.<sup>4)</sup>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에서의 보편성의 도출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가만큼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보편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sup>5)</sup> 따라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의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세계의 각 국가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UN이고 그 결과로서, UN 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실제로 UN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은 각국 및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어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sup>6)</sup>, 국제인권헌장의 전문<sup>7)</sup>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4) 인권의 특성에 관하여 상세히는,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7, 6~8면 참조.

5) 이에 대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지지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도 없고, 인권을 서구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자도 없다. 불평과 서구의 것을 돌리는 자는 주로 지도자들이다.”(장복희, “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5면).

6) 채형복, 『제2관 국제법』, 법영사, 2010, 459면.

7) 이을형, “인권의 국제적 보호”, 『법학논총』 제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172면.

## 2.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의 필요성

UN 차원에서 인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에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그것과 비례하여 그 발전 상황도 다양하다. 특히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종래 인권은 국내관할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UN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 및 그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강제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뿐 아니라, UN의 입장에서도 이 점이 부담이 된다. 그 결과 UN헌장 제2조 제7항에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진 인권규약이 발효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집행은 회원국들의 실천하려는 선의에 달려있게 되었다.<sup>8)</sup>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는 인권문제에 있어서 필요조건, 우선순위와 지역상황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sup>9)</sup>, 세계 공동체가 아닌 이해관계와 문화가 비슷한 공동체가 권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서문제 혹은 남북문제를 통한 비판을 줄일 수 있어, 규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제도가 UN 차원의 인권보장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sup>10)</sup>

그러므로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UN 차원에서 제시한 인권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의 비교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인권헌장이다. 이들을 개괄적으로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8) 장복희, 전제 논문, 66면.

9) 상계 논문, 58면.

10) 初川滿, 『國際人權法概論』, 信山社, 1994, 2頁에서는, “유럽인권조약 및 미주인권조약에 기해서 설립된, 초국가적 특별인권재판소 및 인권위원회는, UN에서의 인권위원회 보다도 계속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1.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협약은 1953년 9월 3일에 발효된 이래 가장 모범적인 지역차원의 인권 보장제도이다.<sup>11)</sup> 전문에서 “세계인권선언 속에 규정된 일정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며”라고 밝히는 것처럼, 동 협약은 세계적인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을 유럽차원에서 이를 올바르게 관철시키고자 합의한 것이다.

동 협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sup>12)</sup> 다른 두 협약과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하여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예컨대,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서 보호하는 비호권과 제15조에서 보호하는 국적의 권리 등은 유럽인권협약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미주인권협약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의 권리와 아프리카인권헌장에서의 발전권, 환경권 등도 찾을 수 없다).

동 협약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법체계에서의 법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유럽인권재판소를 상설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그 결과 국내법원과 같은 강권적 해석을 행할 수 있고, UN의 인권위원회가 자주 유럽 인권조약에 있어서의 해석을 참고하고 있다.<sup>14)</sup> 또한 동 협약 제33조와 제34조에 근거하여, 모든 체약국 뿐 아니라, 모든 사람, 비정부 기구,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 2. 미주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은 1948년 5월 2일에 채택한 미주인권선언을 기반으로<sup>15)</sup> 1978년 7월 18일에 발효하였다. 동 협약도 유럽인권협약과 같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하여서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약 제26조에서 사회권의 보호에 관하여 “점진적 발전”이라는 표제 아래 규정하여 그 보호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11) 오영달, “동북아 지역인권제도의 모색: 유럽인권협약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0권 제3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9, 185면.

12) 경제 및 사회적 권리는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13) 1998년 11월 1일에 발효한 제11의정서 이후, 각료위원회의 사법적 기능과 유럽인권위원회에 사전심사기능을 유럽인권재판소로 이관하였고, 강제적 관할권과 개인의 청원권을 모든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오영달, 전계 논문, 185면.

14) 初川滿, 전게서, 3頁.

15) 미주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상계서, 17頁.

동 조약은, 유럽인권협약을 모방한 점도 많지만, 보호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는 유럽인권협약보다 그 수가 많고, 좀 더 발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예컨대, 법인격에 대한 권리(제1조), 반론권(제14조), 공무담임권(제23조) 등은 유럽인권협약에서 찾을 수 없다).

동 조약의 보장조치는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가 있다. 미주인권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고(제41조), 따라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또는 1개 이상의 미주기구 회원국에서 법인으로 인정된 비정부 기구는 당사국에 의한 이 협의 위반을 고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제44조). 다만 위원회는 판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제50조 제3항). 그리고 유럽인권 재판소와 다르게 미주인권재판소는 당사국과 위원회만이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권리가 있으며,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는 종 협약 제48조와 제50조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제61조)을 주의하여야 한다.<sup>16)</sup>

### 3. 아프리카인권헌장

아프리카인권헌장은 1986년 10월 21일에 발효하였다. 동 헌장도 세계인권선언과 미주인권선원 처럼 자유권과 사회권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인권협약과 미주 인권협약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권을 좀 더 강조하고 있으며(예컨대 노동권, 문화권, 건강권 등은 유럽인권협약과 미주인권협약에서는 찾을 수 없다)<sup>17)</sup>, 특히 동 헌장은 “인민(peoples)”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세대 인권 즉 연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고, 동 선언에서 이를 보호함으로 개개인의 집단인 Group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Group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개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도출되고 다른 협약과는 특이하게, 의무라는 표제 아래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보장조치로서 아프리카 위원회만 존재하고 인권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

16) 미주인권위원회에 의한 심사, 공표라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보아 인권침해의 예방보다는 사후구제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한다. 이을형, 전개 논문, 190면.

17) 이렇게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세의 오랜 식민지상태가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리 보다는 생존권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상계 논문, 193면.

18) 장복희, 전개 논문, 60면.

19) 初川滿, 전개서, 19頁.

위원회의 임무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 증진이다(제45조). 그런데 아프리카인권헌장의 경우 국가만이 타국이 헌장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앞의 두 조약의 보장 조치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한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유럽인권협약·미주인권협약·아프리카인권헌장 비교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인권헌장
보호하는 권리	a. 생명권 b. 고문의 금지 c.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d.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f. 죄형법정주의 g.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h.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i. 표현의 자유 j. 집회 및 결사의 자유 k. 혼인의 권리 l.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m. 차별의 금지	a. 법인격에 대한 권리 b. 생명권 c.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d.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e.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f.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g. 소급입법으로부터의 자유 h. 보상을 받을 권리 i. 양심과 종교의 자유 j. 사상과 표현의 자유 k. 반론권 l. 집회의 권리 m. 결사의 자유 n. 가정에 대한 권리 o. 성명에 대한 권리 p. 아동의 권리 q. 국적에 대한 권리 r. 재산에 대한 권리 s. 이전과 거주에 대한 자유 t. 공무담임권 u.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v. 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 w.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a. 차별의 금지 b. 법 앞의 평등 c. 생명권 d.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e. 신체의 자유 및 안전 f.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h. 양심과 종교의 자유 i. 정보의 권리 j. 결사의 자유 k. 집회할 권리 l. 거주이전의 자유 m. 공무담임권 n. 재산권 o. 노동권 p. 건강을 보호 받을 권리 q. 교육을 받을 권리 r. 가정에 대한 권리 s. 인민에 대한 평등 t. 인민에 대한 생존권 u. 인민의 자결권 v. 인민의 자유권과 발전권 w. 인민의 평화에 대한 권리 x. 인민의 환경권
권리 제한 규정	a. 비상사태 의무 예외 b.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c. 권리남용의 금지	a. 권리를 존중할 의무 b. 타인의 권리,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정당한 필요성에 의한 제한	a. 공동체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 b. 비차별 및 관용의 의무 c. 동 헌장 제29조 상의 의무
보장 조치	a.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및 집행 b. 다만, 모든 국내적 구제 절차가 종료된 이후, 그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a. 미주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청원 b.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 c. 다만, 당사국과 위원회만이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	a. 아프리카위원회의 권고 및 요청 b. 국가로부터 통보 c. 다만,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어야 함.

## IV. 지역인권보장제도의 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 1. 논의의 현황

위에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권보장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 넓게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인권보장제도의 논의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아시아는 지역적 인권보호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가장 낮은 비율로 가입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공동체를 더 우선시 하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과 같은 경우, 그 나라들의 목적은 샤리아(Sharia, 이슬람의 종교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보편적 동의,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 사법부의 독립, 권력분립과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무슬림이 아닌 자에 대한 거주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도 부정되고 있다.<sup>21)</sup>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유교의 영향으로 위계질서의 가부장적 권위에 복종과 계급구조 내에서 개인의 적절한 입지를 강조하고 있어,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고 개인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물론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인권의식이 성장한 곳도 있으나,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북한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을 받는 국가들이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주권 보다 인권을 하위 규정에 뒀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2)</sup>

위와 같은 이유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권보장과 인권에 대한 문제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인권보장제도 특히 지역인권재판소(Regional Court of Human Rights)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랍어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이 중심이 된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의 지역인권재판소의 설립추진, 동남아시아의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서 “The ASEAN Charter”를 비준함으로써 지역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어 약간의 희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 장복희, 전계 논문, 58면.

21) 상계 논문, 61면.

22) 오영달, 전계 논문, 183면.

특히 동 현장 전문에서 인권과 기본적인(fundamental) 자유의 존중과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ASEAN human right body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의 진행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sup>23)</sup>

아시아와 같은 경우,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권보장제도의 논의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지역인권보장제도를 발전시킨 유럽인권협약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역인권보장제도의 모색을 할 때, 정부만이 나섰던 것이 아니라 개인, 비정부 기구 및 정부 관련 단체들이 하나의 인식공동체를 형성하여 기우려서 탄생한 것이고, 유럽인권협약을 체결할 때, 유럽의 모든 국가를 참여시켜 체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인권에 대하여 비슷한 인식을 가진 국가들끼리 지역인권보장제도를 시작 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하고,<sup>24)</sup> 현실적인 여건의 차이가 분명한 유럽과 아시아의 실상을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2.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사점

### 1)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

1953년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인권보장체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지역적 인권보장체계로서 모범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에서 발전한 인권보장제도는 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sup>25)</sup>을 위한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유럽에 비해 아직 법체계·인권사상 등과 같은 인권보장과 관련한 제도가 미비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이 고문·폭력·종교탄압·인신매매 등과 같은 각종 인권관련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인권보장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보장제도의 구축은 유럽인권협약·미주인권협약·아프리카인권헌장 등의 지역인권보장제도의 계수를 통하여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단일 국가 수준에서 실현되는 것보다는 전세계적·국제적 수준에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UN의 세계인권선언 중 권리의

23) 이와 별개로, 아시아의 인권 NGO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Asian Human Right Charter”도 있다.

24)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상계 논문, 192~196면 참조.

25) 존 롤즈(황경식 역), 「정의론」, 서광사, 2007 참조.



집단적 보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자유권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권적 성격의 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서를 지속적으로 개발·비준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기타의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인권문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일정한 지역인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다면 최소한 해당 지역에 속하는 구성원이 인권침해문제에 노출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중 특정국가의 모든 법제도 및 인권보장제도가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최후수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sup>27)</sup> 그 예로 유럽의 인권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장기구의 설치의 필요성도 요청된다고 할 것인데, 현재 UN의 경우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sup>28)</sup>와 같은 인권보장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가입국의 문화적·종교적 배경이 상이함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인권보장제도를 위한 지역인권보장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다만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지역인권보장제도와 지역인권보장기구의 설치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나 넓은 지역, 다양한 인종, 사회적·문화적·종교적 차이, 경제수준 등 아시아 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보장제도의 구축 필요성이 요구된다.

## 2)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대상

유럽인권협약·미주인권협약·아프리카인권헌장 등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면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형성은 인권협약 또는 인권헌장 등과 같이 인권에 대하여 공통된 기준이 확립이 되어야 하고, 지역인권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정치연합기구 또는 인권재판소와 같은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듯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먼저 공통된 인권개념 또는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그 후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 간의 지역적 인권기구설치가 필요하다. 국가 간의 지역적 인권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인권에 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국가, 공통

26) 박선영,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 계수를 위한 제언-헌법 전문의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유럽헌법학회, 2013, 23~24면.

27) 이준일,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104면.

28)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유엔 가입국 중 47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가, 인권보장을 위한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인종, 사회적·문화적·종교적 차이, 경제수준, 정치신념, 지정학적 위치 등의 현실적 여건이 공동의 인권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인권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기준을 전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공통된 국제인권조약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② 주체적 인권관련기관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③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들 중 특정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적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지역인권보장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시도될 수 있고,<sup>29)30)</sup>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 중 국내에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인권관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조사 및 구제라는 공통된 실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인권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등 국가 간의 지역적 인권기구의 설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지역적 인권보장제도가 유럽경제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기준으로 지역적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방법

유럽인권협약·미주인권협약·아프리카인권헌장 등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① 공통된 인권개념 내지 보호 하고자 하는 인권의 범위의 설정을 위한 개념화 단계, ② 인권관련기관에게 반구속력을 부여하는 단계, ③ 인권관련기관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연합기구 또는 인권재판소와 같

29) 박경철·이상경,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 현황과 인권보장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 75면.

30) 그 예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난민이나 아동성매매, 아동노동문제 등 아시아의 특수한 인권문제에 관련성이 깊은 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에 관한 선언이나 협약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생각될 수 있다. 장복희, 전계 논문, 72면.

은 기구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지역인권보장제도 채택을 위해서는 각국의 같은 지역 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인권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정치지도자들의 회의 혹은 정치연합기구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지역 내에 공통으로 적용 하고자 하는 지역인권보장제도를 각 국가들이 채택하여 인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인권보장제도의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부여를 위한 인권협약의 체결 후 구속력 확보를 위한 인권관련기구를 설치하되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관련기구의 결정에 강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sup>31)</sup>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개념의 정립과 인권관련기구를 제도화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공통의 인권개념 내지 인권기준을 확립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공통의 인권개념 내지 인권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연합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sup>32)</sup>

#### 4)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주체

먼저 공통된 인권개념 내지 보호 하고자 하는 인권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시민단체(NGO) 상호간의 연대와 교류, 그리고 인권관련기관과 각종 정부기관간의 상호 교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정부기간간의 상호교류가 중요하다. 특히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대부분의 국제인권문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하여 최초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지역인권보장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각 국가의 시민단체 간에 지역인권보장제도 설립에 관한 공통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제적·국내적 또는 지역적으로 네트워크 내지 연락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인권보장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 국가의 시민단체가 가지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를 설득하여 지역에 적용되는 공통의 인권기준 또는 인권협약을 체결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기도 한다.<sup>33)</sup>

31) 상계 논문, 66면에서는 인권 기준 및 개념의 설정, 인권기준 증진, 인권보호단계로 구분한다.

32) 박경철·이상경, 전계 논문, 80면.

지역인권관련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지역적 국가에 정치기구의 설치가 필수전제 조건이다. 국가 간 정치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인권개념을 형성할 국가의 정부 또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 간 정치연합기구 구성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권보장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인권개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공통된 인권개념에 대한 의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난민, 아동성매매, 아동노동, 아동착취 등의 인권문제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연합기구 또는 인권관련 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sup>34)</sup>

### 3. 소결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인 유럽인권협약 등은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훌륭한 사례이다. 하지만 아시아는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인종, 사회적·문화적·종교적 차이, 경제수준 등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현실적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시아 지역은 공간적으로 하나의 지역 안에 존재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라는 이유로 하나의 공통된 단위로 묶을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모델이라는 이유로 유럽의 지역인권보장제도를 기준으로 지역인권보장제도를 구축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지역적·문화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 묶어 지역인권보장제도의 구축을 도모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되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부담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3) 아세안 각국의 시민단체 등 이들의 네트워크는 아세안회원국들에게 국제적·국내적 인권보호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세안 인권기구를 더 책임성 있고 실효성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라펜디 자민, “아시아의 인권기구에 관한 현재의 논의: 아세아현장에서 인권기구까지”, 『아시아저널』 창간준비 1호, 5·18기념재단, 2009, 145면.

34) 박경철·이상경, 전개 논문, 87~88면.

## V. 결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인권에서 보편성의 도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국가만큼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보편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의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세계의 각 국가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UN 차원에서 인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에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그것과 비례하여 그 발전 상황도 다양하다. 종래 인권은 국내관할권의 문제였으므로, UN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 및 그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강제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뿐 아니라, UN의 입장에서도 이 점이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이다.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는 인권문제에 있어서 필요조건, 우선순위와 지역상황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공동체가 아닌 이해관계와 비슷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동체가 권고하는 사안이므로 동서문제 혹은 남북문제를 통한 비판을 줄일 수 있고 규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제도가 UN 차원의 인권보장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UN 차원에서 제시한 인권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인권보장제도의 논의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지역인권보장제도를 발전시킨 유럽인권협약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협약 등은 지역인권보장제도의 모색할 때 정부만이 나섰던 것이 아니라 개인, 비정부 기구 및 정부 관련 단체들이 하나의 인식공동체를 형성하여 탄생한 것이다. 유럽인권협약을 체결할 때 유럽의 모든 국가를 참여시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하여 비슷한 인식을 가진 국가들이 먼저 지역인권보장제도를 구축 했다는 점과 현실적 여건의 차이가 분명한 유럽과 아시아의 실상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제도인 유럽인권협약 등은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

도를 확립하기 위한 훌륭한 사례이다. 하지만 아시아는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인종, 사회적·문화적·종교적 차이, 경제수준 등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현실적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시아 지역은 공간적으로 하나의 지역 안에 존재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라는 이유로 하나의 공통된 단위로 묶을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모델이라는 이유로 유럽의 지역인권보장제도를 기준으로 지역인권보장제도를 구축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아시아 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지역적·문화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 묶어 지역인권보장제도의 구축을 도모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되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부담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제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자 료

- 라펜디 자민, “아시아의 인권기구에 관한 현재의 논의: 아세아현장에서 인권기구  
까지”, 「아시아저널」 창간준비1호, 5·18기념재단, 2009.
- 박경철·이상경,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 현황과 인권보장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5.
- 오영달, “동북아 지역인권제도의 모색: 유럽인권협약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0권 제3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9.
- 이을형, “인권의 국제적 보호”, 「법학논총」 제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이준일,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  
성 및 시사점”,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7.
-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7.
- 장복희, “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존 롤즈·황경식 역, 「정의론」, 서광사, 2007.
- 채형복, 「제2판 국제법」, 법영사, 2010.
- 初川滿, 「國際人權法概論」, 信山社, 1994.
- 홍성방, 「개정3판 헌법학」, 현암사, 2006.